

■ 특집 :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sup>1)</sup>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 I. 서론

근대사회의 구성 원리, 특히 어떻게 극히 이질적이고 산재해 있는 개인들이 동질성을 느끼고 전체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지, 또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회학이 태동한 계기이자 핵심주제였다. 따라서 그간에 얻어진 사회학의 주요 성과들에는 근대사회의 통합 기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유기적 연대’, ‘합리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미시권력’, ‘시민종교’, ‘아비투스’ 등의 개념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정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의 전근대사회와 다른 조건에서의 사회통합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사회는 그것이 역동적인 만큼 빈번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위기는 한시적이고 돌발적인 것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서구사회에서 이민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이민현상의 경우 사회적 통합은 종족적 소수집단의 사회경제적 통합과 함께 이들과 종족적 다수집단간의 공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회통합’이 정부정책과 학계의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혜경<sup>2)</sup>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의 이민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정책’ 또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정책의 제1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도 이민정책의 제2단계인 ‘사회통합’ 정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1) 진지하고 꼼꼼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이혜진, 이한숙 옮김 (서월: 산지니, 2007).

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2006년에 발표된 일련의 법안들이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출입국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구분, 독자적인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결혼이주의 경우 불법적인 결혼과정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법의 엄격한 적용을, 그리고 결혼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회성원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책을 구분할 필요성은 이주노동자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정반대의 배경을 지닌다. 즉 서구에서 노동이주 관련 정책을 출입국정책과 통합정책의 두 차원으로 분리하는 것은 이미 정주화된 이민들에 대한 통합정책이 불법체류문제 등 출입국 차원의 문제들과 혼재되어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통제의 강화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역으로 한국의 결혼이주 현상의 경우 정책을 구분할 필요성 중 하나는 국제결혼의 불법성에 대한 규제정책이 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이주과정에서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 논의 및 정책은 정주할 것으로 간주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국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문화 교육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다문화 교육은 당사자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일반 학생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및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럽, 미국 등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간 공존에 관한 사회교육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였고 이것이 사회화 과정에 반영되어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종족적 소수자와의 공존의 문제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명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교과내용 곳곳에 그리고 사회의 담론에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간 공존의 문제나 인종주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공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또는 기존의 원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을 때이다. 프랑스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사건의 예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서구사회와 달리 이민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기초한 사회화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새로이 종족적 소수자들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화가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런 식의 사회화 과정을 결여한 성인들의 경우 ‘재사회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서 사회화를 거친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민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민집단이라는 한 사회집단을 염두에 둔 특수한 교육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이민집단에 관한 교육이 오히려 주류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보다는 공존의 철학과 방법론의 부재가 낱을 위험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부터 ‘통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전개해온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과 다문화주의의 부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프랑스 사회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 및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프랑스 대혁명기에 가톨릭교회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 억압되었고 이로부터 사회의 부분적 이해보다 전체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공화주의 전통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종족, 종교, 문화의 다양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새로운 이민’에 따른 문화적, 종족적 이질성의 심화는 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종족적, 언어적 통일성이 강하고 매우 중앙집권적이고 한반도라는 동일한 지역에 오랜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최근 겪고 있는 ‘다문화’ 경험은 분권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이 크고 근대에 형성된 신흥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보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더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다문화와 프랑스의 관계, 통합과 프랑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프랑스 이민자 통합모델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회통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민정책의 역사를 개관하고 4장에서는 ‘문화간

(l'interculturel)'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다문화 논의 및 다문화 교육을 살펴본다.

## II. 이민현상의 프랑스적 특수성

### 1. 다문화주의와 프랑스

프랑스는 캐나다, 호주 등과 달리 소수민족 출신자들이 집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에 통합하는 전통을 지닌 사회이다. 따라서 집단적 권리로써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인정에 근거를 둔 다문화주의가 적합하지 않은 사회였다. 그러나 1974년 노동이민 금지조치가 이주민들이 정주화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고, 이후 이들이 개인으로서의 주류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낙후지역에 종족적 소수자들이 밀집되면서 소수민족집단의 존재가 가시화되었다. 최근 프랑스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종족적 이질성에 대한 인정보다 시민으로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 그 형태도 고정된 것으로 인식되는 개별 문화들간의 차이의 확인에 그치는 영미권의 다문화주의와 달리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문화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문화간주의(interculturalism)'의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간교육'은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보여주는 교사 및 학생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행태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문화성에 초점을 둔다. 2000년대 초 프랑스의 현실은 '공화주의 대 다문화주의'라는 이분법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 2. 프랑스의 사회통합

프랑스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유럽이나 동유럽으로부터 이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세기 남짓하지만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모든 인간이 신분, 종족, 지역과 같은 '부분적인' 소속감을 넘어 프랑스 및 프랑스 민족이라는 '전체'에서 하나가 되는 소위 '공화주의' 이념을 표방해왔다. 이 때 '프랑스 민족'은 근대 프랑스 사회의 주류 종족인 '골족'과 같은 특정 종족이 중심이 되는 '종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이 표방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모든 개인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공동체로 여겨졌다. 물론 현실에서는 동일한 역사,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진 ‘종족적’ 민족관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식민지정복 및 통치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즉 본국에서와 달리 식민지에서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이 상징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전도사로서, 그리고 인류전체 교화의 사명을 지닌 위대한 가톨릭국가이자 선택 받은 제일 위대한 민족(une Grande nation)으로서 행동했던 것이다.<sup>3)</sup>

원초적인 소속집단을 초월한 사회통합의 원리는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되어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모델은 전형적인 공화주의 모델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통합’이 본격적으로 프랑스 이민 논의 및 정책의 핵심 개념이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그 배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1974년 노동 이민 금지조치가 의도치 않게 이민자들의 정주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노동,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기한 프랑스에 살게 된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가 제기되었다. 1세기 전 초창기 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정주화 현상과 달리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등 비유럽 출신으로 구성된 이민자들의 정주화는 적응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반발이 훨씬 심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주의 모델의 위기가 ‘통합’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프랑스 이민역사의 태동기였던 19세기 말 공화주의 이념의 목표는 모든 소수민족을 산업화, 도시화, 병역의무, 정교분리적인 공교육체제 등을 통해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1세기전과 달리 위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의 소수민족 통합 역량이 약화됨에 따라 모델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sup>4)</sup>

### III.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이민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동이민. 여기에는 장단기 이민과 계절노동자가 포함된다.
- 둘째, 가족합류 이민인데 주로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이민을 말한다.

3) Marie-France Toinet, “Etats-Unis: l’Etat tentaculaire, irrésistiblement inefficace,” in Noëlle Burgi (dir.) *Fractures de l’Etat-nation* (Kimé. 1994), pp.82-83.

4) Arsène Zehraoui, “Les cités de banlieues.” *Les Temps Modernes* (1993), pp.209-220.

셋째, 불법체류자인데 이들은 불법입국자와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ed)로 나눌 수 있다.

넷째, 망명신청중인 자(asylum seekers)와 망명을 허가받은 자(refugees)

그리고 이들의 존재와 연관되어 형성되는 이민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이민통제 또는 출입국 관리. 여기에는 국경통제, 난민인정 절차의 효율화 등이 포함된다.

둘째, 불법이민 퇴치. 불법이민을 도와주는 자들에 대한 처벌, 불법이민 고용자에 대한 처벌 등이 있다.

셋째, 이민자 통합정책. 이민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 언어교육, 이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들, 이민자들을 배려하는 육아정책 및 교육제도.<sup>5)</sup>

이민정책의 세 측면은 한편으로는 상호 연관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통합의 문제가 출입국관리나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계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사르코지 정권이나 80년대 이후 극우파가 이민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달리 다루어져야 할 세 영역을 융합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1970년대 이후 프랑스의 이민과 이민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합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이민문제의 형성과 사회통합논의의 등장

주변국들과 달리 18세기부터 이미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19세기 말부터는 중동부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 이민자의 수가 1851년 380,000명, 1930년대에 3백만에 육박했다.(1931년 2,890,000명) 이 수치는 국민전선 당수 르 펜(J.-M. Le Pen)이 ‘300만 이민, 300만 실업’이라는 교묘한 구호로 실업문제를 이민자들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오도

5) Peter Stalker, “Migration Trends and Migration Policy in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40 (2002), pp.151-176.

함으로써 지지를 넓혀나가던 1980, 90년대와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일찍이 이민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발달하였다. 2차 대전 이후가 되면 쿼터제에 의한 노동이민이나 가족합류이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사회의 이민의 역사에서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 계기는 전후 경제 재건에 일시적으로 동원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이 1974년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V. Giscard d'Estaing) 대통령의 새로운 노동이민 금지조치로 인해 이민자인 프랑스사회에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가족합류이민만이 허용되어 이 형태가 이후 합법적인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는 또한 프랑스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귀국비용을 지급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sup>6)</sup>

이를 배경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민이라는 주제가 프랑스의 정치, 법, 언론의 논의에 등장하였고 특히 1980년대 초반 이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1973년 이민중단조치 이후 나타난 이민에 대한 통제는 출입국, 국적 등에 관한 기존 법에 변화를 요구했고 이 법률상의 변화가 이민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이 되게 만든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는 마침 1950, 60년대에 독신으로 이민 온 노동자의 2세들이 20대가 될 때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민 출신 가족의 구성원들의 영구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정책이 요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과의 공존에 부정적인 주류사회 성원들의 우려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나타난 실업문제와 복지 축소는 종족적 소수와 다수간의 공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6) 노동이민 금지 이후의 이민의 유형을 보면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 초 경제위기 직전까지 거의 통계가 없었던 자유로운 이민이나 2차 대전 이후 고도성장기였던 '영광의 30년(1945-1975)' 시기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의 정부와 쿼터제 등의 협약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이민 공급과 달리 이제 이민의 주된 형태는 프랑스에 영구히 머물게 된 이민자들의 가족의 합류가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는 영국이나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가족합류 이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민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망명이나 노동이민은 전체 이민 중 극히 적은 비율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체류 이민자들을 입국사유별로 나누어보면 가족(합류) 이민 76.9%, 망명 8.4%, 노동이민 5.3%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2004: 14)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의 대통령 당선 이후 사회당 정부는 대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합법화를 시행하고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를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물론 외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국한해 그것도 20년이 지나서야 실현되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1975년, 덴마크는 1977년, 노르웨이는 1978년, 네덜란드는 1985년에 각각 외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통합의 수단이자 외국인들의 이해가 정치적으로 대변되는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1980년대 내내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이민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여론은 선거권이 부여되기 직전까지도 부정적이었다. 2000년 11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9%만이 외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에 찬성하였다.<sup>7)</sup> 찬성진영의 논리에 따르면 선거권 부여는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그들의 노동과 세금으로 나라에 기여해 온 외국인에 대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반대진영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국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등 시민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프랑스대혁명 이래 시민권과 국적을 연계시켜 온 전통에 어긋나고 종족집단의 정치로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행 프랑스법이 국적취득의 길, 즉 선거권 취득의 길을 크게 열어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유럽시민권’ 원리의 채택으로 회원국의 지방선거에서 유럽연합 소속국가 출신자들의 선거권을 부여하게 하면서 시민권과 국적간의 전통적인 연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물론 유럽연합 국가 출신자들에 국한해서지만 말이다.<sup>8)</sup>

1984년에는 노동계약상태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10년 체류증이 탄생했고 이와 동시에 본국으로의 귀향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미테랑 집권 이후의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민자들은 ‘프랑스 거주 북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협회’(1982년)을 창설하는 등 조직화되었다. 1983년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드뤼(Dreux)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가운데 1984년 ‘아랍출신자들의 행진“(la marche des Beurs)가

7) Louis Harris, “Sondage,” in *La lutte contre le racisme et la xénophobi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8) Pierre Bernard, *Immigration: le défi mondial* (Paris: Folio actuel, 2002).



이민 후예들에 대한 권리의 평등을 주창했다. 이 행진은 미테랑 정권의 진“에 힘입어 대두된 반인종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아랍계 프랑스인들의 사회운동’(le mouvement des Beurs)이 주도한 것이었다. 프랑스 최초의 본격적인 소수민족 사회운동이었던 이 운동은 1974년 미숙련 노동이민의 금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고국의 가족 합류, 영구정착체장을 시대적1)이에서 태동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화주의적1)평등에 기초 힘입합‘ 체장을 전망을 제시하였고, 반인종주의 단체들은 사회적, 법적 차원에서의 동화라는 목적을 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자들의 조직화 현상은 극우세력에 의한 이민문제의 정치도구화 현상을 동반했다. 극우세력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문제를 이민자들의 존재와 연계시키고, 이를 빌미로 억압적인 이민정책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인종주의적 태도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이민’이라는 주제가 정치적 장의 자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출입국 관련 정책과 통합정책(교육, 고용, 주거 등)간의 혼돈, 융합이 심화되었다.<sup>9)</sup> 이민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민문제 관련 학자 및 정부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프랑스 통합모델의 위기’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공화주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이민자 통합모델의 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화주의 모델이 등장한 188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 프랑스 사회는 모든 소수민족을 당시 산업화, 도시화, 병역의무, 정교분리적인 공교육체제 등을 통해 주류사회에 동화시킬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1세기전과 달리 위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의 이민자 통합 역량이 사라짐에 따라 통합모델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sup>10)</sup>

1986년 우파가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내무장관에 임명된 샤를 파스쿠아(Ch. Pasqua)는 체류증 발급을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추방

9) Arsène Zehraoui, “Les cités de banlieues,” *Les Temps Modernes* (1993), pp.209-220.

10) 제라루이(각주 9) 참조)는 90년대 초 이민문제, 프랑스 통합모델 위기론의 배경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지적한다. 첫째, 경제위기와 그에 뒤이은 포스트포드주의 체제로의 사회경제적 변화. 둘째, 교육체계의 문제. 셋째, 기존 남성노동자와 합류하게 된 가족이민과 이민 2세의 부상. 넷째, 도시구조의 변화와 도시공간 재구성의 여파.

을 수월하게 하는 식으로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 이 ‘파스쿠아 법’에 따라 이루어진 101명의 아프리카 말리 출신 이민자들의 추방은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게 된다. 1989년 ‘파스쿠아 법’은 온건해지고 1990년 당시 좌파 사회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미셸 로카르(M. Rocard)는 이민에 호의적인 선언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당 정부는 자문기관으로 ‘사회통합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을 창설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9년 히잡 착용 사건과 이 사건이 촉발시킨 정교분리주의에 대한 격렬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관용적이었던 일부 사람들이 정교분리주의 원리를 근거로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여름에는 불법체류자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시위가 공공건물의 점거로 이어질 만큼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 해 8월 파리의 성 베르나르 성당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300명의 말리와 세네갈 출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 2. 2000년대의 변화: 통합인가 통제인가?

2000년대 들어 ‘통합’ 개념이 1980년대와는 다른 맥락에서 강조되게 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 26일 개정된 <이민의 조절, 외국인들의 체류 및 국적 관련 법>(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à la nationalité)은 ‘통합’이라는 기준을 체류증 발급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 법은 또한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이민정책이 강경해짐에 따라 특히 출입국이나 보호감호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위 ‘불법이민’의 상당 부분은 불법입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워진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절차, 그리고 보다 엄격해진 체류증 갱신제도에 따른 것이었다.<sup>11)</sup>

11)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이민정책이 강경해짐에 따라 유럽연합은 2003년 <가족합류이민에 대한 지침서>(directive sur le regroupement familial)라는 일종의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이러한 추세를 막아보려는 유럽연합 차원의 시도를 하게 된다. 2003년 1월 27일 채택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03/9/CE’ 권고안의 경우에도 망명신청자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통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85년 쉥겐조약(Schengen Convention)을 계기로 회원국 간의 경계를 허물고 EU 전체의 국경통제에 공동대응하거나 이민정책을 공동개발 하는 등 공동대처를 강화시켜온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강경노선의 주역은 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였다. 우파인 자크 시락 대통령이 재선된 해인 2002년 내무장관이 된 후 그는 매우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서 여행자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조건을 요구하고,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체류증을 받거나 프랑스 국적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소요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는 식으로 이민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을 도입한 것이다. 소위 신이민법이라고 불리는 2006년 7월 개정 <이민 및 통합에 관한 법>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핵심 내용이었던 이 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가족합류이민(regroupment familial)의 조건 강화<sup>12)</sup>, 10년짜리 주민증(Carte de Résident) 취득 요건 강화 등이었다.

이 개정 법률은 통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규정의 도입과 더불어 1974년 이후 중단된 외국노동력 수입의 재개를 선언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변화가 프랑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럽 이민정책의 변화추세를 보면 1950, 60년대는 자유주의적, 개방적 경향을 보이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억압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노동력 확보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해 노동이민을 재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그렇다고 이민정책이 단순히 더 개방적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이민의 재개는 관광, 건설, 계절노동, 무역 등 몇몇 직종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능력과 재능’(Compétence et talents)이라는 이름이 붙은 체류증이 신설된다. 이 ‘신 체류증’(Une nouvelle carte de séjour) 제도는 자국이나 프랑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이나 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3년 체류증을 부여하며 재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주창된 ‘선택된 이민’이라는 개념은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있

12)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고국에 있는 가족의 합류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12개월에서 19개월로 연장하였다. 1984년부터 시행되어온 10년짜리 체류증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프랑스에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발급하였는데 이제 소득과 프랑스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는 조건부 발급으로 변화했다.

13) Peter Stalker, “Migration Trends and Migration Policy in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40 (2002), pp.151-176.

어서 ‘불어구사능력’이라는 조건이 강화된다. 이러한 최근 경향은 1990년대 초 국적법 개정 논의 당시 프랑스의 국민적 통합성을 강화시키려는 진영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당시 이들은 국적 취득과 관련해 속주주의의 자동적 적용을 비판하며<sup>14)</sup> 프랑스에서 난 이민자 자녀에게 16세가 되면 통합가능한지 판단하는 선별절차를 추가하려고 시도했다. 참고로 현재 프랑스국적법을 보면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되는 경우는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프랑스인인 경우(혈통주의), 부모가 없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출생지주의),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지만 그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sup>15)</sup> 등이다. 국적취득이 가능한 사례를 보면 프랑스인과 결혼한 후 1년이 지난 배우자, 외국인부모 사이에서 프랑스에서 나고 11세에서 18세까지 최소한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한 아이, 프랑스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난 모든 성인 외국인은 일정 조건하에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sup>16)</sup>

물론 담론과 현실의 괴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의 ‘바람직한 외국인’ 담론의 예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환영하는 외국인은 전문기술직 노동자와 고급인력’이라는 직업차별적 편견에 입각한 도입 기준과 달리 실제로 일본사회의 이주노동자는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2007: 26) 프랑스의 경우도 ‘유용한 이민’, ‘선택된 이민’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불황기 국민의 반이민 정서를 만족시킬 정치적 수사의 측면이 강하다.

14) 1993년 7월 22일 법 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는 16세에서 21세 사이에 ‘프랑스 국민이 될 의지’를 표명하는 ‘의지선언’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1993년 국적법의 경우 여러 부작용과 현실 적용의 문제 등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이 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 첫 세대인 1976년생 청년들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최종 시한(경우에 따라 1997년 말 또는 1999년 말에 절차가 완료됨)이 되기 전에 폐기되었다. 1998년 5월 16일에 새로이 개정된 법률안은 “프랑스에서 이민자 혹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는 18세에 프랑스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혹은 11세 이후 연속적으로 5년째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별도의 선서 절차 없이) 프랑스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프랑스에서 출생한 아이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1973년 국적법의 원칙으로 복원시킴으로써 속주주의를 강화시키게 된다.

15) 이 규정은 1962년까지 프랑스의 한 주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난 부모의 경우 등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서 태어난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16) Pierre Bernard, *Immigration: le défi mondial* (Paris: Folio actuel, 2002), pp.298-9.

사야드(Sayad, 1999)는 ‘통합’ 담론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첫째, 과거 통합의 역사들의 신화화.

둘째, 현재 통합에서의 갈등 은폐.

셋째, 통합은 정치권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여김, 즉 국가기구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 간주.

넷째, 통합에 대한 정치담론은 현실에 대한 진정한 행위라기보다 막연한 정치의지의 표현.

그는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합논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주류사회와의 관계형성 과정 전체 차원에서 “통합”을 보아야 한다.

둘째, 특정집단을 겨냥하는 직접적 대응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 차원에서, 그리고 특정 이민자에 국한되지 않는, 또는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시민, 노동자로 간주하는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정책과 행위들의 축적 결과로 나타나는 2차적 산물이다. 직접적으로 통합을 언급하는 담론의 부상은 통합의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당사자인 이주민들과 주류사회에게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법률적, 정책적 변화에서 우리는 최근 프랑스 집권정당이 얘기하는 통합(integration)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지원의 차원보다는 구조기능주의적 일탈론 및 사회문제론 차원의 통합, 달리 말해 타자에 대한 통제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정책 비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980년대 프랑스에서 이민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체계모니를 장악했던 통합(integration) 개념이 현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17)</sup> 당시 통합 개념은 사회에 온전하

17) A. Sayad, “Les ‘trois ages’ de l’émigration algérienne en France,” in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15 (1977), pp.59-79.

게 편입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화와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다.

#### IV. 다문화 논의 및 다문화 교육

이 장에서는 이민정책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해온 프랑스의 ‘다문화’ 관련 논의 및 교육의 경험에 대해 살펴본다.

##### 1. 프랑스의 다문화주의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동시대 사회 전반의 문화적 변화의 일환이었다. 다문화주의 모델의 대척점으로 여겨지는 공화주의 모델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다문화주의 시대가 있었고 최근 프랑스가 보이는 강경한 공화주의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온건한 차이주의에서 급진적인 공화주의로(du différentialisme modéré au républicanisme exacerbé)’ 전환한 결과이다. 즉 줄곧 공화주의를 표방해왔지만 프랑스는 오랫동안 브르타뉴 공동체나 북부지방의 이탈리아공동체가 큰 거부감 없이 존재해왔고 포르투갈 출신 이민들의 성공적인 프랑스사회 통합도 상업적 연결망 등 종족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문화적 차이 및 종족 공동체에 대해 관용적이거나 적어도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았다. 즉 공화주의가 다문화사회와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 공화주의 체제에서 국적은 인종, 종교, 문화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원리에의 자발적인 동의 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서로 다른 집단과 정체성을 넘나들 수 있는 사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국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도 존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5공화국의 관용성은 68년 5월을 계기로 비판받게 되고 짧은 다문화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당시 프랑스 다문화주의는 68혁명에서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국가의 억압성 비판, 그리고 이 혁명 이후 등장한 특수주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었고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처럼 당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sup>18)</sup> 68년 혁명 이후 프랑스사회의 일부는 지배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

18) Blanc-Chaléard, *Histoire de l'immigration* (Paris: la découverte: Repères 2001), p.90.

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들어 <동화> 개념을 비판하며 문화적 차이를 찬양했다. <모자이크 프랑스>, <다원적인 프랑스> 등 새로운 사고가 당시에 큰 반향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불평등과 인종주의의 부상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차이를 중시하는 것이 차별로의 길을 여는 것으로 우려했다. 이렇게 해서 공화주의적 평등에 기초한 ‘통합’(intégration)이라는 이상이 1983년 <아랍출신자들의 행진>(la marche des Beurs)<sup>19)</sup>으로 상징되는 보편주의적 입장의 이민 사회운동의 사상이 되었고, 그 선봉에 섰던 반인종주의 단체들은 사회적, 법적 차원에서 동화라는 전통적인 대의를 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1989년 <히잡 사건>과 그것이 촉발시킨 정교분리주의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관용적이었던 일부 사람들이 정교분리주의 원리를 근거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1980, 90년대에는 68 혁명 이후 시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프랑스 지식인의 일부가 다문화주의 모델로 개종하게 된다. 이들의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비판받게 된 프랑스식 국민국가 모델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인간의 유동적이고 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포스트국가사회, 포스트민족사회로 이행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현상, 즉 참여적 지식인의 개종 현상은 1990년대 말 프랑스에서도 본격화된 미국화, 앵글로색슨화의 한 징표라고 비판을 받았다.

## 2. 다문화 교육의 다양한 형태

서구사회에서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해당사회의 시민권 개념, 가치체계 등에 따라 다르다.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교육형태로는 ‘다문화(multicultural)’ 또는 ‘문화간(intercultural)’ 교육, 반인종주의 교육, 발

19) 이는 “인종차별반대 권리평등촉구 행진(Marche contre le Racisme et pour l'Égalité des Droits)”을 가리키는 관행적 표현으로 1983년 프랑스 최초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반인종주의 시위였다. 리용 남쪽 교외 주거지구인 망게뜨(Minguettes)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종주의적 성격의 폭력사건에 항의해 일어난 폭동이 계기가 된 이 시위의 주된 요구사항은 10년간 유효한 체류증과 외국인 투표권의 요구였다.

전 교육, 글로벌 교육, 평화교육, 이중언어교육, 민주주의 교육, 시민권 교육 등이 있다.<sup>20)</sup>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모델인 ‘다문화 모델’과 ‘문화간 모델’은 미묘하지만 일련의 차이점을 지닌다. 다문화 모델은 영미권, ‘문화간’ 접근방식은 불어권(프랑스, 캐나다의 퀘벡주, 벨기에 등)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인데 이 양자 간의 차이는 ‘문화주의(culturalism)’와 ‘문화간주의(interculturalism)’의 차이와 일맥상통한다.

문화주의(culturalism)는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설명으로 정치, 경제 등 현실의 다른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적 설명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주의는 “문화에 대한 소아병적 인식”이라고 비판되는 것이다. 문화를 절대시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문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화주의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의 ‘문화간주의’와 구분된다. 다문화가 어떤 고정된 차이에 대한 확인에 머문다면 ‘문화간’은 문화에 대한 동태적인 인식의 길을 연다. ‘문화간주의’에서는 상호작용이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정의의 핵심요소로 인식된다. 또한 문화간주의(interculturalism)는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처럼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공통의 공적 문화의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주의와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압달라 프레세이유<sup>21)</sup>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문화주의적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는 1970년대 이래 이민자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질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다른 문화권 출신 학생에 대해 교사는 교육자여야 하는가, 민족학자(ethnologist)여야 하는가?” 교육학에서 문화주의는 차이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보다는 타문화 출신 학생이 처한 총체적인 개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의 선구적인 시도들 역시 문화주의적, 오리엔탈리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오랜 역사의 산물

20) Fernand Ouellet,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t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in *VEI Enjeux*, 129 (2002), pp.146-167.

21) Martine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Que sais-je? no.3487, PUF, 2004)



이었다. 이 협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것은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회운동 자체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22)</sup>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의 최근 사례를 보자. 대학의 경우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여러 대학에서 문화다양성 교과목 및 교수직이 설치되었다. 그 사례를 보면 2005년 알제리의 틀렘센(Tlemcen)의 아부베크르 벨카이드 틀렘센 대학(University of Aboubekr Belkaid-Tlemcen)의 ‘대중문화’ 전공, 2004년 사이프러스 니코시아(Nicosie)의 사범대학에 설치된 ‘문화다양성과 평화의 문화를 위한 문화간 대화’ 전공, 2007년 프랑스 니스대학에 설치된 ‘영화와 상상력’ 전공, 2006년 과테말라 라파엘 란디바르 대학(University of Rafael Landivar)에 설치된 ‘문화다양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공, 2006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리베라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대학에 설치된 ‘상상력에 대한 문화적 비교학적 연구’ 전공, 2006년 토고의 로메 대학(University of Lomé)에 설치된 ‘아프리카문화 보호 사상’ 전공 등이 있다. 이 유네스코의 프로그램들은 좁은 의미의 문화 영역에 치중한 것으로 위에 언급한 신규 전공의 명칭에서 소수문화의 보전이나 문화간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네스코의 반인종주의적 시도들이 지닌 문화주의적 측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반인종주의 담론은 유네스코 등이 추진한 전후 기획에서 출현하였고, 서방정부들의 지원을 받아 나치의 대학살 직후에 인종주의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치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렌틴(Lentin, 2004)에 따르면 이 주류적 형태의 반인종주의는 자결적 반인종주의를 고취한 반식민주의 운동에서 발전했던 국가중심적 비판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대신 인종주의가 개인적 편견의 결과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정치적 설명을 심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며, 인종주의에 대한 정치화된 대응보다는 문화적인 대응을 옹호한다. 렌틴은 유네스코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유네스코는 인종이 부적합한 용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인종이 인간 존재들을 범주화하는 비과학적 방식이며

22) 한국 역시 다문화 열풍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담론 성공의 배경에는 1990년대 이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 그 일환으로서 소수자, 정체성, 다양성, 차이, 인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필두로 한 한국적 신사회운동의 부상이 있었다. 다문화 현상이나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했던 동시대 사회전반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었다. 엄한진,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51권 2호, pp.112-140.

문화로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작업에 힘을 불어넣은 사고가 ‘인종’의 정치적 본성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순전히 사이비과학적인 기원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를 택했기 때문에 문화라는 대안은 인종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통해 밀즈(Charles W. Mills)가 밝히고 있듯이 인종주의는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계약’이라는 구체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최근 한국 이민담론은 바로 유네스코의 전례를 답습하는 측면이 있다. 구조적 인종문제를 개인적인 의식의 문제 또는 집단적이더라도 문화적 차이, 문화적 불관용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종에서 문화로의 전환’이라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하먼<sup>24)</sup>에 따르면 신인종주의, 즉 최근의 변형된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우월성보다 민족간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즉 현실에서의 종족간 차이를 선천적인 자질의 차이로 설명하며 이 차이가 그들이 속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민족성’이나 ‘문화’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또한 최근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역시 과거 국제이해교육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타 문화를 오래전부터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문명의 대척점에 있는 야만으로 여기는, 또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것으로 여기는 등 에드워드 사이드<sup>25)</sup>가 제시한 오리엔탈리즘적 표상을 발견할 수 있다.

### 3. 프랑스의 ‘문화간주의’와 ‘문화간 교육’

#### (1) ‘문화간’ 측면에 대한 논의

현대사회는 사회화, 정체성의 형성이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구분된다. 이 또한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종교적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다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적 인간’의 부상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

23) 찰스 W. 밀즈, 『인종계약』, 정범진 옮김, (서울: 아침이슬, 2006).

24) Chris Harmon, “The Return of the National Question,” *International Socialism* (Autumn 1992), pp.3-61

25)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9).

화간 현상은 고정된 문화간 차이보다 개인주의의 발전과 주체의 부상이라는 현상과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셸 비비오르카가 말하는 ‘역사적 전복’은 바로 근대를 특징지었던 동질적인 사회라는 모델의 해체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다.<sup>26)</sup>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화간 장(intercultural field)’의 부상은 바로 이상과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연관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08년을 ‘문화간 대화’의 해로 지정한 것도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이민 현상과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실제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는 상당부분 이주민들의 정주화의 결과였다. 그 결과 문화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민 출신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외곽의 문제, 인종주의 등 이민 관련 논의와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 ‘문화간 관계(l’interculturel)’는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성(multiculturalité), 문화간 대화(dialogue interculturel), 소수문화 인정(reconnaissance des cultures), 서로 다른 종족출신간의 결혼, 편견, 문화적 스테레오타입,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매우 민감한 논의를 야기했다.<sup>27)</sup> 현재의 문화간 관계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보면 한편으로 ‘문화적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민담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실천에 대한 인정을 주창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8)</sup>

‘문화간(the intercultural)’ 측면을 광의로 이해해 타자성(altérité)과 동일시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항구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서로 다른 문화와 연관된 개인들 사이의 또는 집단들 사이의 관계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겨우 20-30년전부터 시작되었다. 끌로드 끌라네(Claude Claret)는 문화적 다원성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최근의 양상은 새로운 변화에 의한 것이고 문화적 이질성

26) Benjamin Boulay, “L’interculturel en France,” *Hommes & Migrations*, Hors-série (novembre 2008), pp.61-95.

27) Marie Poinot, “Contribution au débat,” *Hommes & Migrations*, Hors-série (novembre 2008: L’interculturalité en débat.), p.1.

28) Abdelhafid Hammouche, “Définir l’interculturalité par les situations, les rapports pratiques et symboliques” *Hommes & Migrations*, Hors-série (novembre 2008: L’interculturalité en débat), pp.4-8.

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세계화, 즉 경제적, 인적, 문화적 이동과 관계의 심화를 지적한다.<sup>29)</sup>

짧은 역사와 이 개념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간’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이주 및 이주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중첩된다. 즉 노동이민, 난민, 장단기 유학생, 관광객 등 매우 다른 성격과 지위를 가진 집단들 중 어떤 집단을 ‘문화간 관계’라는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sup>30)</sup> 또한 문화간 관계에 해당하는 사안들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들의 투표권문제부터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전통적인 의복의 착용문제나 종교의례의 실천, 성과 가족에 관련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 등 매우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논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른 유럽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문화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초부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 영역의 연구들이 다루는 소재나 이론적 자원에서 공통점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문화와 유사하게 ‘문화간 관계’도 학문영역이자 사회영역이고 매우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 문화간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것은 미국에서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와 게르트 호프스테드(Geert Hofstede)와 같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학자들의 저작이 불어로 출판되면서부터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문화간 관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1)</sup>

① 아직 대학의 연구주제가 되지 못했던 1970년대 ‘문화간 관계’ 논의는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서 이 개념이 등장했다. 최초의 사용은 1975년 교육부 문건에서 시작되었고 1976년 유네스코 컨퍼런스에 등장하였다. 곧이어 이민현상과 연관되어 학교에서 제기된 논의들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관련 기관들에서 ‘문화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1980

29) Boulay, “L’interculturel en France,” pp.63-64.

30) Hammouche, “Définir l’interculturalité par les situations,” pp.6-7.

31) Boulay, “L’interculturel en France,” pp.61-63.

년대 초 이 개념은 학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② 1980, 90년대는 학문적 장에서 이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1984년 문화간 연구 학회(Association pour la recherche interculturelle, A.R.I.C.)가 창설된다. 이 학회는 국제적인 학회이며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였다. 이 학회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표방했다. 이 학회는 1986년부터 시작된 라르마땅(L'Harmattan) 출판사의 <문화간 공간>이라는 간행물 시리즈의 발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도 1980년대부터 관련 저작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③ 1999년은 이 영역의 연구가 심화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해였다. 압달라 프레체이유와 루이 포르쉐가 기획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저작을 필두로 미디어, 문학, 신기술, 일상의 의사소통, 문화적 정체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간 상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2) 문화간 교육

프랑스의 경우 ‘문화간’(intercultural)이라는 표현, ‘문화간 교육’이라는 개념은 1975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공교육에 도입되었다. 1970년대부터 ‘문화간 교육’, ‘문화간 교육학’, ‘문화간 활동’, ‘문화간 과정’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늘어났고 그 결과 1980년대에는 ‘문화간 교육’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73년 노동이민의 원칙적 금지조치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 조치 이후 나타난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 현상은 학교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했다. 즉 자유왕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부분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한 이주노동자들의 2세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이제 영원히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막대한 수의 이주민들의 자녀가 프랑스 공교육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문화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진 것이다. 특히 학교가 서로 다른 규범들간의 갈등과 공존의 장이 된 것이다. 새로운 교육체계가 논의되었고 그 결과 소위 ‘문화간 교육학’이 등장한 것이다. 문화간 교육에 대해 제시된 대표적인 정의를 보면 먼저 ‘문화간’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문화들간의 평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식의 관계 및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간 교육은 문화가 다른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이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나 학교가 시도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sup>32)</sup> ‘문화간 상황’은 서

32) Jennifer Kerzil,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n France,” *Carrefour de l'éducation* 2002-2, no.14., (2002), pp.120-159.

로 다른 문화권 출신의 개인, 집단, 제도가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sup>33)</sup>

대표적인 ‘문화간 교육’ 주창자인 압달라 프레체이유(Martine Abdallah-Pretceille)는 문화간 교육을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동질화라는 프랑스 학교의 전통에 대해 다양성과 복합적 정체성을 프랑스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원성을 고려한 교육은 인종 폭력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현대사회가 문화적, 시민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간 교육은 이질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오히려 동질성을 강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간 교육학은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주민의 자녀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식해야 하며 이 특수성이 교육기관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때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간 교육학은 문화간 현상을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행태로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배문화 대 피지배문화, 민중문화 대 학교문화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sup>34)</sup>

학교교육에 ‘문화간 활동(activités interculturelles)’을 도입하는 것은 교육 영역에 문화간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이주민 자녀들의 출신 문화와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이들이 부모를 따라 출신 국가로 귀환할 경우에 본국에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설정된 소수 언어 및 문화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주변화되었다. 압달라 프레체이유는<sup>35)</sup> 이러한 시대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970년대의 열광이 지나간 이후 ‘문화간’이라는 개념은 현재 교육영역에서 금기시되거나 거부 대상이 되었다”.

33) Claude Clanet, *Corps, cultures et therapies* (Toulouse: Universitaires du Mirail, 1993), p.21.

34) Boulay, “L’interculturel en France,” pp.74-75.

35)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p.37..

프랑스의 경우 문화간 측면은 학교에서 여전히 은폐된 부분이다. 베아트 콜레(Béate Collet)는 이주민 가정의 자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파리의 동부 외곽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간 영역이 학교 교육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프랑스 교육프로그램에 문화간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교재는 교사나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교육개혁에서 종교나 이민현상,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 교과내용에 도입되었지만 이것이 프랑스 사회의 다문화적, 다종교적 현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민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60, 70년대 노동이민에 관한 내용과 2000년대 초 불법체류자문제만을 언급하고 이민현상에 따른 프랑스사회의 변화와 같이 문화간 관계의 측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프랑스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문화성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은폐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공화주의적 평등주의에 입각해 학생들 개개인의 문화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sup>36)</sup>

‘문화간’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른 경향을 지닌 세력에 의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1993년 미셸 파제(M. Pagé)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화간 교육에 대해 7가지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한다. 즉 보상적인 경향, 문화이해에 초점을 둔 경향, 평등주의적 다극화 경향, 고립주의적 경향, 반인종주의적 경향, 공민교육적 경향, 빈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sup>37)</sup> 우에이예<sup>38)</sup>는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을 구분하는데 고려할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 첫째, 다양성에의 개방성.
- 둘째, 기회의 평등과 형평성.
- 셋째, 사회적 결속.

이 세 가지 요인은 어느 정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다양성의 수용에만 치우친 접근은 평등이나 사회적 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

36) Boulay, “L’interculturel en France,” pp.75-77.

37) Michel Pagé, *Courants d’idées actuels en éducation des clientèles, scolaires multiethniques* (Québec: Conseil supérieure de l’éducation, 1993), pp.11-12.

38) Ouellet, “L’éducation interculturelle.”

람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측면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 문화적 다원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채택된 많은 시도들은 문화적 특수성의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으로써 위 세 요인 중 첫 번째에 과도하게 치우친 것이었다. 결국 이 시도들은 당초 교육관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7가지 결과가 보고되었다.

첫째, 해당 개인들을 고정된 문화적 정체성에 가두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문화적 조합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둘째, 집단간 경계의 강화와 불관용의 위험 증대, 타자의 거부

셋째, 이민자나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위한 기회의 평등의 약화

넷째,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

다섯째,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정체성을 주류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의 낙인효과와 주변화

여섯째, 문화가 더 이상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현실이지 못하고 왜곡되고 오래된 풍습에 머물게 되었다.(folklorization)

일곱째, 다양한 개별 문화를 고려해야 함에 따라 교과과정이 파편화되었다.<sup>39)</sup>

이러한 1980년대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경험은 다양성의 존중과 더불어 평등과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시민권 교육과의 연계였다. 시민권 교육은 공히 문화간 교육의 목표들을 아우르는,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부들은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 더욱 더 다양화되는 집단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되고 배제된 집단들의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 제도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한한다. 정치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소수집단의 소외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

39) Fernand Ouellet, "L'éducation interculturelle: les risques d'effets pervers," in *L'interculturel: Une question d'identité* (Québec: Musée de la Civilisation, 1992), pp.61-108.



에서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통합의 문제는 곧 민주주의, 시민권의 문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 교육이 정부나 엘리트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면 조작되고 이데올로기 주입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 교육은 지배집단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경계하는 중립적인 성격을 견지할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간 교육이 다양성에의 개방적 태도뿐 아니라 사회적 결속, 평등의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시민권 교육 역시 다양성에의 개방성, 사회적 결속,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권 교육은 4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물론 이 네 구성요소는 학교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 첫째, 학교 운영과 학급운영에서의 민주주의
- 둘째, 지방, 국가, 세계의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성격의 프로젝트
- 셋째, 다양한 교과과정에서의 시민권 관련 테마 고려
- 넷째, 교과과정에 시민권 교육과정에 포함

## V. 요약 및 결론

최근 한국의 이민논의에서 ‘사회통합’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구분과 독자적인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당위로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바로 이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의 한 가지라는 점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경험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프랑스는 캐나다, 호주 등과 달리 소수민족 출신자들이 집단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에 통합하는 소위 공화주의 전통을 지닌 사회이다. 따라서 집단적 권리로서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인정에 근거를 둔 다문화주의가 적합하지 않은 사회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장기불황, 인종주의, 정주이민의 증가, 이민자들의 출신 종족의 다양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공화주의 통합모델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통합’ 개념이 1980년대와는

다른 맥락에서 강조되었다. 즉 이전과 달리 ‘통합’이 이민자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체류의 조건으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통합 및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부에서 다문화주의가 세계화에 적합하지 않은 공화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간주의(interculturalism)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었다. 1980, 90년대에는 68 혁명 이후 시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프랑스 지식인의 일부가 다문화주의 모델로 개종하게 된다. 이들의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비판받게 된 프랑스식 국민국가 모델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다문화’가 어떤 고정된 차이에 대한 확인에 머문다면 ‘문화간’은 문화에 대한 동태적인 인식의 길을 연다. ‘문화간주의’에서는 상호작용이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정의의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또한 문화간주의는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공통의 공적 문화의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문화간 교육’은 ‘문화간주의’에 입각한 통합의 방법론으로 1970년대 중반 등장하였다. 문화간 교육은 이질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오히려 동질성을 강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간 교육에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시민권 교육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시민권 교육은 공히 문화간 교육의 목표들을 아우르는,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한국의 경우 소수민족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고안된 시민권 교육은 종족적 소수자들과의 평등한 공존의 소양이 필요한 토착 한국인 대상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eculiarity of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in France and Challenge of Multiculturalism

Han Jin Eom(Hallym University)

France is a society where ethnic minorities try individually to integrate itself into mainstream society rather than exist as a separated group, differently with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Australia where the multiculturalism has developed. Therefore this country has not been a society having conditions suitable for multiculturalism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thnic minority culture as collective rights. But since the ban on employment-based immigration in 1974 which caused unexpected results of sedentarization, has come to the fore the existence of ethnic minorities especially those of non\_european origin, having difficulties of integration and consequently living together in an isolated area. It's in this context that multiculturalism emerged recently in French society. But multiculturalism have had a hard time being recognized in French society which emphasizes a homogeneity as a citizen more than a recognition of ethnic heterogeneity. Also, it takes the form of 'interculturalism' which considers a concrete interculturalism as an essence of culture, differently with anglo-saxon multiculturalism which is limited to the recognition of distinguished individual cultures regarded as a fixed one. For example, 'intercultural education' focuses on the multiculturalism which is experienced in everyday life such as diverse forms of interenactions with their classmates and teachers the students from immigrant families practice in the school. The French immigration policy of the early 2000 is too complex to be explained simply by the dichotomy of republicanism versus multiculturalism.

주제어

이민, 이민정책, 공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간주의

Key Words

Immigration, Immigration policy, Republicanism,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e-mail: eom3597@hallym.ac.kr